

# 2026년도 회기운영 계획

□ 회기일수: 95일 (임시회 6회/50일, 정례회 2회/45일)

월별	회 기	예 상 안 건
1월	· 제262회 임시회 (8일간) 【1. 19.(월) ~ 1. 26.(월)】	·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· 의안심의
3월	· 제263회 임시회 (7일간) 【3. 18.(수) ~ 3. 24.(화)】	·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· 의안심의
4월	· 제264회 임시회 (15일간) 【4. 16.(목) ~ 4. 30.(목)】	·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· 의안심의
6월	※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: 2026. 6. 3.(수)	
7월	· 제265회 임시회 (7일간) 【7. 1.(수) ~ 7. 7.(화)】	· 의장·부의장 선거 · 개원식 ·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· 상임위원장 선거
	· 제266회 임시회 (5일간) 【7. 20.(월) ~ 7. 24.(금)】	· 주요업무보고 · 의안심의
9월	· 제267회 제1차 정례회 (16일간) 【9. 1.(화) ~ 9. 16.(수)】	·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· 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승인안 · 시정질문 · 의안심의
10월	· 제268회 임시회 (8일간) 【10. 16.(금) ~ 10. 23.(금)】	·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·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· 의안심의
11월 ~ 12월	· 제269회 제2차 정례회 (29일간) 【11.20.(금) ~ 12. 18.(금)】	·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·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·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·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· 시정질문 · 의안심의

※ 상기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#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

□ 회의일수: 97일 (임시회 6회 / 52일, 정례회 2회 / 45일)

월별	회 기	예 상 안 건
1월	· 제230회 임시회 (7일간) 【1. 20.(목)~1. 26.(수)】	·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· 의안심의
3월	※ 제20대 대통령선거: 2022. 3. 9.(수)	
	· 제231회 임시회 (7일간) 【3. 16.(수)~3. 22.(화)】	·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· 의안심의
4월	· 제232회 임시회 (15일간) 【4. 20.(수)~5. 4.(수)】	·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· 의안심의
6월	※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: 2022. 6. 1.(수)	
7월	· 제233회 임시회 (7일간) 【7. 1.(금)~7. 7.(목)】	· 의장·부의장 선거 · 개원식 ·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· 상임위원장 선거
	· 제234회 임시회 (8일간) 【7. 15.(금)~7. 22.(금)】	· 의안심의 · 주요업무보고
9월	· 제235회(1차) 정례회 (16일간) 【9. 14.(수)~9. 29.(목)】	·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· 2021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승인안 · 시정질문 · 의안심의
10월	· 제236회 임시회 (8일간) 【10. 20.(목)~10. 27.(목)】	·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· 의안심의 ·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
11월 ~ 12월	· 제237회(2차)정례회 (29일간) 【11.21.(월)~12. 19.(월)】	·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· 2023년도 본예산안 ·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·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· 시정질문 ·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· 의안심의

※ 상기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## 【참고자료】

### □ 연도별 실제 회의 일수 및 처리 안건

연도별	회의일수	회기별		처리안건
		임시회 / 일수	정례회 / 일수	
2019년	95일	5회 / 45일	2회 / 50일	229건
2020년	97일	6회 / 53일	2회 / 44일	231건
2021년	92일	5회 / 50일	2회 / 42일	252건
2022년	97일	6회 / 52일	2회 / 45일	217건
2023년	108일	6회 / 59일	2회 / 49일	327건
2024년	98일	6회 / 54일	2회 / 44일	248건
2025년	93일	5회 / 48일	2회 / 45일	273건(진행중)

### □ 2022년 및 2026년 회기운영계획 대비표

월별	회기 및 회의 일수			
	2022년 / 97일		2026년 / 95일	
1월	· 제230회 임시회 (7일간) 【1. 20.(목) ~ 1. 26.(수)】	7일	· 제262회 임시회 (8일간) 【1. 19.(월) ~ 1. 26.(월)】	8일
3월	· 제231회 임시회 (7일간) 【3. 16.(수) ~ 3. 22.(화)】	7일	· 제263회 임시회 (7일간) 【3. 18.(수) ~ 3. 24.(화)】	7일
4월 ~ 5월	· 제232회 임시회 (15일간) 【4. 20.(수) ~ 5. 4.(수)】	15일	· 제264회 임시회 (15일간) 【4. 16.(목) ~ 4. 30.(목)】	15일
7월	· 제233회 임시회 (7일간) 【7. 1.(금) ~ 7. 7.(목)】	7일	· 제265회 임시회 (7일간) 【7. 1.(수) ~ 7. 7.(화)】	7일
	· 제234회 임시회 (8일간) 【7. 15.(금) ~ 7. 22.(금)】	8일	· 제266회 임시회 (5일간) 【7. 20.(월) ~ 7. 24.(금)】	5일
9월	· 제235회 제1차정례회 (16일간) 【9. 14.(수) ~ 9. 29.(목)】	16일	· 제267회 제1차 정례회 (16일간) 【9. 1.(화) ~ 9. 16.(수)】	16일
10월	· 제236회 임시회 (8일간) 【10. 20.(목) ~ 10. 27.(목)】	8일	· 제268회 임시회 (8일간) 【10. 16.(금) ~ 10. 23.(금)】	8일
11월 ~ 12월	· 제237회 제2차정례회 (29일간) 【11.21.(월) ~ 12. 19.(월)】	29일	· 제269회 제2차 정례회 (29일간) 【11.20.(금) ~ 12. 18.(금)】	29일

## □ 관련법규: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**제2조(연간 총회의일수)** 원주시의회(이하“시의회”라 한다)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**100일 이내**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3조(회기)**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**20일 이내**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**40일 이내**로 한다.

② 원주시의회의장(이하“시의장”이라 한다)은 원주시장이나 재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**15일 이내**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.

**제4조(집회일)** ① **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**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·9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**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.**

② **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.**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.

**제5조(회기운영)** ① 원주시의회의장은 시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시의원과 원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.

② **제1차 정례회**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에 따른 **행정사무감사**의 실시와 **법 제150조에 따른 전 연도 결산을 승인**하고, 그 밖에 시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**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.**

③ **제2차 정례회**에서는 **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** 및 그 밖에 시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## □ **관련법규: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**

**제2조(의안의 발의·제출)** ① 원주시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

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**회기시작 7일 전**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.